

2025년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사업 신청 공고

안전인삼 유통활성화를 위해 「2025년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사업」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1일

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



1 공모 개요

- (사업명) 2025년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사업
- (공고기간) 2025. 4. 1.(화) ~ 예산 소진 시까지
- (사업기간) 2025. 3월 ~ 2024. 11월
- 지원대상
 -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2025년 관·내외 인삼을 채굴하려는 농가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인삼재배 농업인
- (총사업비) 26,000천원(보조 70%, 자부담 30%)
- (사업내용) 수삼 컬러박스 지원 5,778개
 - 녹색박스 : 생산단계 GAP인증자로 인증관리 준수한 인삼
 - 황색박스 : 미인증자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적합한 인삼
- (지원단가) 4,500원/1박스/75kg(보조 3,150, 자부담 1,350)
 - 지원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, 낮을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

○ 지원기준

- 컬러박스 : 1박스(75kg) × 농가 생산량(3.3㎡당 약 2kg) + 25박스
- * 25박스 : 인삼은 45등급으로 유통 중이나 농가별 평균 25등급으로 선별 유통

< 농가별 박스 산출 >

▶ 인삼을 5,000㎡(1,500평)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: 농가당 66박스 공급

- * 생산량 3,030kg ÷ 75kg(1박스) = ①41박스 + ②25박스(등급구분) = 농가당 66박스
- 소수점 발생의 경우 정수로 올려서 산정(11.2박스 → 12박스로 산정)

- 기준단가 초과시 초과분 자부담으로 처리
- 구입비용이 기준단가 이하인 경우 보조비율(70%)에 따라 감액 지원

2 신청서 접수 및 문의

○ (접수기간) '25. 4. 1.(화) ~ 예산 소진시 까지

* 사업신청서 제출 후 '25. 11월말까지 채굴해야 하며, 채굴 한달 전에 진흥원에 채굴일정 통보)

○ (접수방법) 방문접수

○ (접 수 처) 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(2층) 선진유통TF팀

○ (문 의 처) 선진유통TF팀 ☎ 041-750-1643

3 사업 우선순위 및 선정방법

○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따를 수 있음

- ①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등을 받은 농업인
- ② 경작신고 필지
- ③ 농업재해보험 가입자
- ④ 기타사항 고려 종합적 판단(관내 경작지, 연령 등)
- ⑤ 신청자 마감 후 8월 말경 '25년 채굴여부 최종 확인 후 선정

○ 지원제외 및 후순위 대상자(*기준: 신청서 제출일)
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: 제외
-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 지원 불가

○ 제출서류

- ① 2025년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 1)
- ② GAP인증서(해당자에 한해 제출)
- ③ 안전성 검사 성적서
- ④ 경작신고 확인서 또는 농지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* 경작신고서 없을시 농지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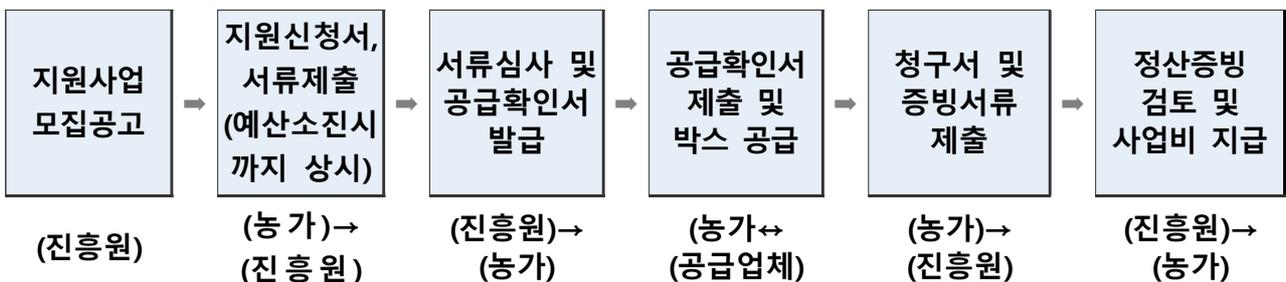
4 지원금 지급 및 정산

○ (지원금 정산) 정산요청 후 증빙서류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

○ (정산 시 구비서류)

- ① 지방보조금 청구서
- ② 사진대지
- ③ 통장사본(농가)
- ④ 거래내역서(견적서, 사업자등록증(박스판매소), 통장사본)
- ⑤ 입금내역(무통장입금 증빙 또는 카드 영수증)
- ⑥ 전자세금계산서(계좌 입금시 제출 必)

5 사업 추진 일정



- 사업비는 전액 자부담으로 우선 지출 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
- 접수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수요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
- 지원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
-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 후 '25년 11월말까지 수확 미추진 및 사업포기시 선정 취소 또는 보조금 지원 제한될 수 있음
- 수확 최소 2주전에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 분석의뢰하여 적합 결과 확인 후 채굴하며, 부적합시에는 수확 연기하여 잔류 반감기 이후 재분석 의뢰하여 적합확인 후 채굴
- 사업대상자의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,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지원사업에 제외될 수 있음